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2. 1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11월 9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11월 14일

라. 상정일자: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3. 11.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유욱준)

가. 제안이유

○ 다자녀 할인을 서울시 조례와 합치하도록 정비하여 다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구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소비자 보상권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자녀 할인을 서울시 조례와 합치되도록 정비(안 제9조)

○ 구의 귀책에 따른 반환을 소비자 귀책 시 반환 규정과 대칭적으로 규정 마련(안 제10조)

○ 체육시설의 실제 운영 현황에 맞도록 운영시간 등 조문 정비(안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할인을 서울시 조례와 합치하도록 정비하고, 구의 귀책 사유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대한 보상권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30% 감면적용을 받는 대상 중에서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를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으로 변경함.
 - 안 제10조(사용료의 반환)는 체육시설 관리상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현행 조례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용개시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을 반환”하되,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하도록 함.
 - 안 [별표 3](체육시설 사용료)에서는 체육시설의 운영 현황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의 주말 이용기준 시간을 현행의 “2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변경하고,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에 대해서는 이용 기준시간(4시간)을 명시함. 또한, ‘안양천 체육시설’의 테니스장 이용 시 코트 1면당 사용료를 받고 있어 현행의 “개인사용료”로 명시한 부분을 “전용사용료”로 변경한 것임.
- 검토 결과
 - 본 안건은 다자녀 할인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조례와 합치되도록 정비하고 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대한 보상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에 대한 30% 감면 기준 조항을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합치하도록 하되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현행의 30% 감면기준을 유지함.

- 또한, 사용개시일 이후의 사용료의 반환 규정과 관련하여 현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료 전액만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를 개선하고자 후자의 경우에 대해 사용 개시 전일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개시 이후의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해서 사용자 보상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본 개정을 통해 감면대상 조항을 서울시 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사용자에게 대한 보상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등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58 호
----------	---------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다자녀 할인을 서울시 조례와 합치되도록 정비하여 다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구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소비자 보상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자녀 할인을 서울시 조례와 합치되도록 정비(안 제9조)
- 나. 구의 귀책에 따른 반환을 소비자 귀책 시 반환 규정과 대칭적으로 규정 마련(안 제10조)
- 다. 체육시설의 실제 운영 현황에 맞도록 운영시간 등 조문 정비(안 별표 3)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4)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라. 입법예고(2023. 10. 5.~10. 25./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제10조제1항제6호 중 “사용할 수 없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을
“사용개시일 전일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그 밖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 준용”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평일			공휴일(토요일 포함)			비고
			성인	청소년	어린이	성인	청소년	어린이	
대림운동장	개사료	테니스장	8,000			10,400			1면 기준(2시간)
	전사료	축구장	40,000			52,000			1팀 기준(2시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사료	일일입장	3,000	2,000	1,500	3,000	2,000	1,500	평일 기준(3시간) 주말 기준(2시간30분)
		월 정기	44,000	27,500	22,000	일일 입장 별도 구매			
	전사료	체육경기	130,000			170,000			기본 기준(2시간)
		체육경기 외 행사	330,000			430,000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개사료	일일입장	3,000	2,000	1,500	4,000	2,500	2,000	실내/실외 이용 기준시간(4시간)
		월 정기	성인 40,000, 청소년 30,000, 어린이 25,000						
	전사료	체육경기	25,000			30,000			1루트 기준(2시간) 개인사용료 별도
안양천 체육시설	전사료	인조잔디 축구장	40,000			52,000			1팀 기준(2시간)
		테니스장	8,000			10,400			1면 기준(2시간)
	전사료	야구장 (성인)	50,000	13,000	10,000	65,000	16,900	13,000	1팀 기준 (2시간 30분)
		야구장 (유소년)	10,000			13,000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2월은 07:00~18:00, 3월~10월은 06:00~19:00 까지로 한다. 4.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시 전용사용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구 주관 및 구청장기(배) 대회 등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 5.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사용할 때 대림운동장,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 7.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 8. 실외체육시설의 야간 조명을 사용할 경우 기본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p> <p>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30% 감면</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u></p> <p style="padding-left: 20px;">다.·라. (생 략)</p> <p>③·④ (생 략)</p> <p>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1. ~ 5. (생 략)</p> <p>6.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상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u>사용할 수 없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u></p>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u></p> <p style="padding-left: 20px;">다.·라.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u>사용개시일 전일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u></p>

<p><u>반환</u></p> <p>② (생 략)</p>	<p><u>그 밖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 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 준용</u></p> <p>② (현행과 같음)</p>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 258 호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2023. 11. 27.

제안자: 우경란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 해당 조례안 일부개정 내용 중 대림운동장 테니스장을 사용함에 있어 해당 체육시설의 수요 특성상 개인 사용료를 징수하기보다는 전용 사용료로 징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함.

2. 수정내용

- 별표3의 체육시설 사용료 중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개인 사용료를 전용 사용료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3의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개인 사용료”를 “전용 사용료”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3]체육시설 사용료	[별표3]체육시설 사용료	[별표3]체육시설 사용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시설명</th> <th colspan="2" style="width: 80%;">구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대림운동장</td> <td>개인 사용료</td> <td>테니스장</td> </tr> <tr> <td>전용 사용료</td> <td>축구장</td> </tr> </tbody> </table>	시설명	구분		대림운동장	개인 사용료	테니스장	전용 사용료	축구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시설명</th> <th colspan="2" style="width: 80%;">구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대림운동장</td> <td>개인 사용료</td> <td>테니스장</td> </tr> <tr> <td>전용 사용료</td> <td>축구장</td> </tr> </tbody> </table>	시설명	구분		대림운동장	개인 사용료	테니스장	전용 사용료	축구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시설명</th> <th colspan="2" style="width: 80%;">구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대림운동장</td> <td>전용 사용료</td> <td>테니스장</td> </tr> <tr> <td>전용 사용료</td> <td>축구장</td> </tr> </tbody> </table>	시설명	구분		대림운동장	전용 사용료	테니스장	전용 사용료	축구장
시설명	구분																									
대림운동장	개인 사용료	테니스장																								
	전용 사용료	축구장																								
시설명	구분																									
대림운동장	개인 사용료	테니스장																								
	전용 사용료	축구장																								
시설명	구분																									
대림운동장	전용 사용료	테니스장																								
	전용 사용료	축구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제10조제1항제6호 중 “**사용할 수 없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을
“**사용개시일 전일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그 밖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 준용**”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평일			공휴일(토요일 포함)			비고
			성인	청소년	어린이	성인	청소년	어린이	
대림운동장	전사용료	테니스장	8,000			10,400			1면 기준(2시간)
	전사용료	축구장	40,000			52,000			1팀 기준(2시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사용료	일일입장	3,000	2,000	1,500	3,000	2,000	1,500	평일 기준(3시간) 주말 기준(2시간30분)
		월 정기	44,000	27,500	22,000	일일 입장 별도 구매			
	전사용료	체육경기	130,000			170,000			기본 기준(2시간)
		체육경기 외 행사	330,000			430,000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개인사용료	일일입장	3,000	2,000	1,500	4,000	2,500	2,000	실내/실외 이용 기준시간(4시간)
		월 정기	성인 40,000, 청소년 30,000, 어린이 25,000						
안양천 체육시설	전사용료	인조잔디 축구장	40,000			52,000			1팀 기준(2시간)
	전사용료	테니스장	8,000			10,400			1면 기준(2시간)
	전사용료	야구장 (성인)	50,000	13,000	10,000	65,000	16,900	13,000	1팀 기준 (2시간 30분)
		야구장 (유소년)	10,000			13,000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2월은 07:00~18:00, 3월~10월은 06:00~19:00 까지로 한다. 4.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시 전용사용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구 주관 및 구청장기(배) 대회 등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 5.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사용할 때 대림운동장,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 7.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 8. 실외체육시설의 야간 조명을 사용할 경우 기본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p> <p>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30% 감면</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u></p> <p style="padding-left: 20px;">다.·라. (생 략)</p> <p>③·④ (생 략)</p> <p>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1. ~ 5. (생 략)</p> <p>6.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상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u>사용할 수 없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u></p>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u></p> <p style="padding-left: 20px;">다.·라.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u>사용개시일 전일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u></p>

<p><u>반환</u></p> <p>② (생 략)</p>	<p><u>그 밖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 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 준용</u></p> <p>② (현행과 같음)</p>
---------------------------------	---